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위탁운영 등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며, 수어통역센터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운영 등의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

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(당초)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

(변경) 장애인복지시설

나.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(당초) 「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」, 장애인복지위원회

(변경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,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

다. 수어통역센터 2개소 명칭 현행화(안 별표 1)

- (당초) 경북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, 구미수어통역센터

(변경) 경상북도 수어통역지원센터, 구미시 수어통역센터

라. 용어 정비(안 제10조)

3. 조 례 안 : 불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”을 “장애인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”을 “장애인복지시설”로, “「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”로, “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한다”를 “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시”를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”을 “장애인복지시설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(제2조 관련)

구분	명칭	위치
중증장애인 거주시설	다함께하는길	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150-3
장애인 단기거주시설	사랑의쉼터	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35
	구미시장래인 단기거주시설(가칭)	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-329
장애인 공동생활가정	수호공동생활가정	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864-6
	다운공동생활가정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25, 301호 (형곡동, 대성하이츠 1차)
	밀알행복터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3길 16-21, 101호 (형곡동, 대진주택)
장애인복지관	구미시장래인 종합복지관	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 340 (형곡동)
장애인 체육시설	구미시장래인체육관	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 340 (형곡동)
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	구미시시각장애인 등생활지원센터	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85 (봉곡동)
수어통역센터	경상북도 수어통역지원센터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4길 7 (형곡동)
	구미시 수어통역센터	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6길 20-5, 2층 (원평동)
장애인 직업재활시설	구미직업재활센터	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4길 19 (임은동, 임은5길 4-14 1층)
	하랑직업재활센터	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48, 1-1층 (사곡동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<u>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</u>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7조(위탁운영) ① ----- <u>장애인복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) <u>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</u> 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「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른 <u>장애인복지위원회</u> 로 대체한다.	제8조(위원회) <u>장애인복지시설</u> ----- ----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----- --- <u>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</u> 로 한다.
제10조(위탁협약의 해지) ① (생략)	제10조(위탁협약의 해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설, 장비 및 비품은 <u>시</u> 에 귀속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.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<u>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시설</u> 에 대하여 지도·감	제11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----- <u>장애인복지시설</u> ----- -----

독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
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- 2의2.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: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, 지역사회 물리적·사회적 환경개선 사업, 장애인의 권익 옹호·증진,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박 연 길
	팀 장	최 선 자
	담 당 자	김 현 정 (480-5182)